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6. 3. 19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방*선 외 3인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				
	지번	552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26.3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방화지구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6.76 m²	건폐율	26.58 %	층수 지하 : 지상2층
	주용도: 제1종근린생활시설		구조:	철골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- m	용적률	53.2 %	연면적 합계 173.52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 체)분야	○ 인접 건축물 등 명확한 영향력을 근거로 보강공법·공사 등을 강구하여 시설물의 추가 보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○ 기존 해체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을 항목별로 목록화하고 개선된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할 것 ○ 소음·진동 계측 결과를 기반으로 이격거리를 제시하고, 발생원과의 소음·진동 저감방안에 적용할 경우의 정량적인 저감효과를 계획서에 명기할 것 ○ 기존 붕괴된 부분 및 존치된 구조물의 안전등급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, 이를 반영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수립·보완하여 제출할 것 ○ 인접건물에 소음, 진동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 ○ 인접건물의 취약부분에 계측기(게이지)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것 ○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 할 것(철골보 및 기둥 뿐 아니라 슬래브에도 스윙머신으로 커팅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파쇄하는 방법 등의 진동 최소화 방안이 필요)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√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6. 3. 19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미추홀구청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606-8	관련지번	외 6필지	
	대지면적	-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 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대로2류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- m ²	건폐율	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5층
	주용도: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, 연와조		건축물 동수	3 동
	최고높이	15.1 m	용적률	- %	연면적 합계 -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주안동 606-10번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보수·보강 계획 등을 강구할 것 ○ 인접건물 주안동 606-10번지에 대한 적절한 보강안에 대해 검토할 것 ○ 벽이음철물의 보강안에서 파이프 서포트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방식을 변경할 것 ○ 지하층 해체 시 형성되는 경사구배의 평면도를 제시하고, 비탈면 기울기와 대지경계간 상관성을 제시할 것 ○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제시하는 터파기 기울기는 상재하중 및 지장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, 터파기로 인한 지장물 영향을 확인하고 웬스 전도 방지 보강 방안을 수립할 것 ○ 인접건축물들이 노후화 되어있어 착공 전 더욱 세심하게 사전 조사를 진행할 것 ○ 주안동 606-10번지의 지하층 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 ○ 주안동 606-8번지 도로측 흙막이 또는 지하층 벽체에 레이커 설치 검토할 것 ○ 장비 진입 시 주안동 606-8번지 비계설치 구간에서 진입 및 스윙반경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할 것 ○ 계획서 상 위험물 저장소 위치가 부적절하므로 변경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-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3. 19.
------	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

건 축물 현 황	건축면적	155.07㎡	건 폐 율	45.21 %	층 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2층
	주 용 도 :	노유자시설	구 조 :	연 와 조	건 축 물 동 수 1 동
	최 고 높 이	6.9 m	용 적 륜	88.4 %	연 면 적 합 계 326.25 ㎡

☐ 원안 의결 ☒ 조건부 의결 ☐ 재검토 의결 ☐ 부결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6. 3. 19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디엘*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				
	지번	109-119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-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40 m²	건폐율	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5층
	주용도: 기실건축물(현장사무실)		구조: 조립식경량패널조	건축물 동수	1 동
	최고높이	15.1 m	용적률	- %	연면적 합계 1,080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해체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○ 건축물의 부재별 해체 순서를 구조도면에 번호를 붙여 표현할 것 ○ 지붕골조 해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, 가급적 도면에 해체 순서를 표기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